

일본 국세청의 주류산업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

I. 서 론



서 희 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일본의 주류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의 진전과 소비자주의의 다양화에 따른 주류 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규제완화의 진전 등 생산·유통·소비의 다양한 국면에서 큰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 및 판매업 등 각 주류업계에서는 경영기반의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사실 일본 주류업계가 계속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음주방지나 주류용기의 재사용 등 사회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주류업계는 금후에도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 및 국제적 경제나 사회 환경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 目 次 ■

- I. 서론
- II. 일본 주류산업의 현황
- III. 주류산업에 대한 행정지도의 과제
- IV. 결론

II. 일본 주류산업의 현황

1. 주세수입

일본에서도 주류는 우리 나라와 같이 고율

의 주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중요한 재정자원이다. 1997년도 전체 주세액은 약 2조 31억엔²⁾ (한화 : 21조 2천 528억원)으로 일본 조세 및 인지수입 세입액 전체³⁾의 3.6%를 점유하는 국가의 중요한 수입의 하나이다.

2. 1998년 주류 과세수량의 개요

아래 <표1>를 통해 살펴보면 1998년 일본에

서의 주류전체 과세수량은 약 10,118천 kl(1997년은 10,051천 kl)로, 이 수치는 지난 1996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량이다. 이를 주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실주, 리큐르류(샴페인 등), 잡주(발효주 등)는 역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주요 주류별 과세수량을 살펴보면 청주는 110만 2천 kl로 전년의 117만 9천 kl에 비해 7만 7천 kl(▲6.8%)가 감소했으며, 소주 역

<표 1> 1998년분 주류과세상황 (국산 및 수입분의 합계)

	1998		1997		전년대비 비율(%)		구성비(%)			
	수량 kl	세액 엔	수량 kl	세액 엔	수량 kl	세액 엔	1998년		1997년	
							수량 kl	세액 엔	수량 kl	세액 엔
청 주	1,102,452	143,009	1,179,686	153,289	93.5	93.3	10.9	7.5	11.7	7.7
합성청주	54,543	3,830	54,991	3,907	99.2	98.0	0.5	0.2	0.5	0.2
소주	갑 류	399,200	87,539	421,726	65,614	94.7	133.4	3.9	4.6	4.2
	을 류	325,109	50,942	330,720	36,595	98.3	139.2	3.2	2.7	3.3
	계	724,329	138,481	752,446	102,209	96.3	135.5	7.1	7.3	7.5
미 림	109,291	2,345	2,345	2,248	104.1	104.3	1.1	0.1	1.0	0.1
맥 주	6,256,087	1,385,610	6,803,000	1,507,481	92.0	91.9	61.8	72.5	67.7	73.3
과실 주류	과실주	401,141	22,022	220,608	12,176	181.8	180.9	4.0	1.2	2.2
	단미과실주	15,889	1,765	12,405	1,384	128.1	127.5	0.2	0.1	0.1
과실 주류	계	417,030	23,787	233,014	13,560	179.0	175.4	4.2	1.3	2.3
	위스키	141,232	61,152	137,677	113,176	102.6	54.0	1.4	3.2	1.4
	브랜디	25,593	11,388	27,979	23,683	91.5	48.1	0.3	0.6	0.3
	계	166,829	72,541	165,657	136,859	100.7	53.0	1.7	3.8	1.7
	스프릿류	26,733	8,800	26,973	10,065	99.1	87.4	0.2	0.4	0.3
	리큐르류	280,886	28,785	280,141	25,017	100.3	111.1	2.8	1.5	2.8
잡 주	980,309	103,028	450,839	47,586	217.4	216.5	9.7	5.4	4.5	2.4
합 계	10,118,492	1,910,217	10,051,634	2,003,121	100.7	95.4	100.0	100.0	100.0	100.0

1) 자료 :「세무경리」, 1999.10.12자, pp. 2~8.

2) 이하에서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일본돈 100엔 = 한화 1,061원으로 평가한다.

3) 일본의 1997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 세입액은 55조 6천억엔(한화 : 589조 9천 160억원)이다.

4) 맥주와 같은 원료로 제조된 주류를 말한다.

시 1998년 5월과 10월 주세율의 인상영향에 의해 1997년 75만 2천㎘에서 72만 4천㎘로 2만 8천㎘(▲3.7%)나 감소했다.

맥주는 소비자들의 발효주⁴⁾로의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세수량이 625만 6천㎘로, 1997년의 680만 3천㎘에 비해 무려 54만 7천㎘(▲8.0%)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이 발효주라고 생각되는 잡주의 과세수량은 98만㎘로 이는 1997년의 45만 1천㎘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52만 9천㎘, 27.4%).

과실주는 1994년 이후부터 낮은 가격인 국산와인과 수입와인에의 수요가 신장한 이유와 건강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적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1997년의 22만 1천㎘에서 1998년에는 40만 1천㎘로 대폭으로(18만㎘, 81.8%) 증가하였다.

위스키류는 소비자의 선호가 저알콜음료로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1994년 38만 1천㎘를 피크로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1998년 5월과 10월의 주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16만 7천㎘로 1997년의 16만 6천㎘에 비해 소폭인 1천㎘(0.7%)가 증가하였다.

한편 주세액은 1998년의 경우 1조 9,102억엔(한화 : 20조 2천 672억원)으로 1997년의 2조 31억엔(한화 : 21조 2천 528억원)에 비해 929억엔(한화 : 9천 856억원)이(▲4.6%) 감소하였다.⁵⁾

3. 주류제조업의 개요

일본에서의 청주제조업 제조자수는 1962년

에 2,472명이나 되었으나 최근 10년동안에 240명이 감소하여, 1997년도를 기준으로 2,232명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중소 영세기업⁶⁾이다.

한편 소주 갑류의 제조자수는 86명이며 최근에는 제조자수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제조수량은 지난 1989년도 수치가 최고치이었으나 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1992년도 이후부터는 양판점의 저가격 또는 대용량 상품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제조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주 을류의 제조수량은 1986년도를 피크로해서 그 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었지만, 대도시에서의 수요가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92년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1998년에는 1994년도 이후로 제조수량 최고 수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소주을류 제조업은 전체 소주을류 제조업자의 대부분이 南九州 및 沖繩지역에 편재하고 있으며, 能本국세국 관내의 제조업자(232명)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중소기업비율은 99.6%)이며 반수 정도(41.4%)가 결손 또는 저수익 업체이다.

한편 맥주의 제조수량은 날씨의 영향 등에 의하여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1994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기업인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연달아 발표된 발효주로의 수요변화로 말미암아, 1994년도 이후에는 제조수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 맥주시장은 대 메이커인 기린맥주(주), 아사이맥주(주), 샷보루맥주(주), 산도리맥주(주), 오리온맥주(주)의 다섯 회사가 전체의 99.6%를 점유하고 있다.

과실주의 제조수량 역시 지난 1991년도를

5) 일본의 주세액의 과거 최고수치는 1989년 2조 1,699억엔(한화 : 23조 226억원)이다

6) 중소기업비율 (자본금 1억엔(한화 : 10억 6천 1백억원)이상 또는 종업원 300명이하의 제조자의 비율)은 99.4%이며, 그 중 반수(55.3%)가 결손 또는 저수익 (세전순이익 50만엔(한화 : 5백 3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피크로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저가격 와인의 발표를 발판으로 인한 시장 확대에 의해 1993년도 이후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7년도 제조수량은 1992년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과실주 제조업자수는 전체 335명이며 포도를 원료로 한 제조자 147명에 대해서 경영 실적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중소기업비율은 94.6%)이며 약 3할(27.9%)이 결손 또는 저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효주는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며, 맥아사용비율을 억제한 발효주가 지난 1994년 12월 이후부터 대기업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잇달아 출시됨으로 인하여 1996년 12월의 세율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수요가 신장되고 있다. 그리하여 발효주의 1997년도 제조수량(48만 7천㎘)은 맥주 제조 수량의 약 7.3%에 상당하는 규모에 달하고 있다.

4. 주류판매업자의 개요

(1) 주류도매업자

일본의 주류도매업자는 약 1,600명이며, 약 7만여명이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기업의 평균은 주류판매수량이 약 6,700㎘이고, 총매출액은 약 65억엔(한화 : 689억원)이며 종업원수는 45명이 된다.

한편 사업규모로 보면 전체 주류도매업자 중 약 94%가 자본금 3천만엔(한화 : 3억 1천 830억원)이하 또는 종업원 100명이하의 중소기업

이며, 전업비율에 있어서는 전체 주류도매업자 중 70%이상의 기업이 약 7할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영내용은 약 55%기업이 결손이거나 또는 세전순이익이 50만엔(한화 : 530만원)미만의 저수익기업이다. 특히 매출규모가 10억엔(한화 : 106억원)이하의 기업들중 약 73% 기업이 결손이거나 저수익기업이다.

최근 5년동안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경영성과가 결손이거나 저수익기업인 주류도매업자 비율의 추이는 아래 <표2>와 같다.

(2) 주류소매업자

일본 전체 주류소매업자는 약 13만명이며, 한 매장당 주류판매수량은 약 76㎘이고 종업원수는 7명이다.

업태의 구성을 1996년도와 1991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일반소매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이 약 79%로 1991년도의 약 88%와 비교하면 9%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편의점 중 주류판매편의점의 비율은 1996년에 약 12%로, 1991년의 약 8%와 비교해 4%나 증가하였다.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주류판매수량을 일반소매점의 주류판매수량비율과 비교해 보면 1996년은 약 66%로, 1991년의 약 83%와 비교해 17%나 감소한 것이다.

한편 기업 경영내용을 뒷장 <표3> 최근 5년간(1994년~1998년)결손·저수익기업 비율의 추이를 통하여 살펴보면 1996년도는 세전순이익이 252만엔(한화 : 2천 673만원)이고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이 2.4%로, 1991년도의 394만

<표 2>

최근 5년간 결손·저수익기업 비율의 추이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약 41%	약 47%	약 53%	약 51%	약 55%

이처럼 주류도매업의 경영성과는 갈수록 열악해져감을 알 수 있다.

〈표 3〉

최근 5년간 결손·저수익기업 비율의 추이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약 35%	약 37%	약 40%	약 45%	약 46%

주 : 1996년은 전체조사, 다른 연도는 추출조사이다.

엔(한화 : 4천 180만원), 3.2%에 비해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소매업자중 약 46%가 결손이거나 또는 세전순이익이 50만엔(한화 : 530만원)미만인 저수익기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류소매업자 역시 주류도매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가 갈수록 열악해져 감을 알 수 있다.

III. 주류산업에 대한 행정지도의 과제

일본국세청은 대장성설치법 제4조에서 '주류 등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는 것' 및 '주류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면허, 이것을 경영하는자, 주류업조합, 그 연합회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주류업계에 대하여 이른바 주류행정을 지도하고 있다.

주류행정은 주류생산에서 유통에 걸쳐 폭넓게 즉, ① 주류 원료의 안정적 확보, ② 주류의 품질유지와 향상, ③ 소비자 이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의 적정화, ④ 면허제도의 정화 또는 원활한 운영, ⑤ 주류의 유통에서의 공정 또는 자유로운 거래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외에도 최근에는 ⑥ 규제완화의 대응, ⑦ 미성년자 음주문제의 대응, ⑧ 주류용기의 재사용 추진, ⑨ 주류제조에 관한 산업폐기물의 처리 등 주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이중에서 중요한 것을 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성년자 음주방지에 대한 대책

(1) 주류판매시 5가지 실천 항목

주류는 관습성, 의존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보다 좋은 음주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주류업계에 대해 미성년자의 음주방지를 배려하는 시각에서 판매와 광고선전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종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8년 4월에는 1997년 6월 13일자의 중앙주류심의회의 답신 「주류면허제도 등 의 개선방안에 대해서」의 취지 등에 따라 주류판매시에 주류소매업자 등은 미성년자의 음주방지 대책으로 ① 연령확인의 철저, ② 야간에 주류판매체제의 정비, ③ 청량음료의 분리 진열, ④ 현행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 ⑤ 종업원 연수 등의 실시의 5가지 항목 실천사항에 대해서 전국소매주류판매조합중앙회 등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소매업자 등이 이러한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으로 장관통달을 발표하였다. 또한 상기 실천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1998년 11월에 그 실천상황에 대해서 편의점 업계 및 슈퍼마켓 업계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 결과 등에 따라 1999년 5월부터는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각각의 업계에 대해 업계전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2)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에 대해서는 전국 소매주류판매조합 중앙회에서 1994년 10월의 중앙주류심의회보고「알콜 음료의 주류판매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중간보고)」등을 기초로 하여 1995년 5월에 2000년 5월 시행을 목표로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 등을 지도하는 취지의 장관통달을 1995년 7월 28일자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전국 소매주류판매조합중앙회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의 임시총회에서 개량형 자동판매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판매기 제조회사에 대하여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전국 조합원에 대해서도 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에 대해 이해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주류자동판매기를 철폐하도록 하는 소매주류판매조합 중앙회의 결의는 자주적인 대책으로 충분히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본 국세청은 주류업자 등에 대해 '현행의 주류자동판매기의 철폐와 개량형으로의 대체'를 지도하고 있다.

2. 리베이트 문제 등

일본 주류시장의 최근 동향중에서는 단연 대기업 주류제조회사들의 판매경쟁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예로써 슈퍼마켓과 양판점에서의 맥주판매가격이 소매기준가격(350kL × 24병, 5,232엔(한화 : 5만 5천 511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의 주류판매가격은 과거 1965년 6월 기준판매가격제도 폐지이후로 자유가격이 되었으며, 국세청 당국으로서는 각 기업의 주류판매가격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류가 일본 국가의 중요한 재정자원임과 동시에 알콜음료 특성을 갖고 있는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류의 가격은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및 주류업자의 경영 건전성 확보라는 양면성 시각에 따라 합리적 또는 타당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류의 거래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규정상의 부당한 가액에 의한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공정한 상거래가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1992년 이후부터는 주류 거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제조회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도 면허업자로서 독점금지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에 노력해 왔던 것이고 조사결과 원가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행정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사실 주류거래의 현실에서도 매출수량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쟁, 특정의 주류취급을 조건으로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또한 큰 매출력을 배경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반드시 건전한 거래환경이 확보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불투명한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1997년 6월 13일의 중앙주류심의회 답신에서「중소사업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고, 더욱이 제141회 국회의 중·참 양의원에서 채택한「주류판매면허제도의 견지 등에 관한 청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채택됨에 따라서 1998년 4월 8일자로「공정한 경쟁에 의한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모든 주류업자가 존중해야 할 공정한 룰에 대해서 국세청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지침에 관해서는 주류조합의 회답 등의 모든 기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지와 계몽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종래부터 실시하

고 있는 주류거래 실태조사에서는 모든 부분에까지 시야를 넓혀 지침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룰에 따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다.

3.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에 관한 규제완화

(1) 추류면허에 대한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주류의 판매면허제도에 대하여는 수급조정 요건의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996년 5월 규제완화추진계획에 의거 중앙 주류심의회에서 그 검토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1997년 6월 30일 국세청장관에게 「주류면허제도 등의 견해에 대해서」의 답신을 한 바 있다.

1998년 3월 31일의 각의결정 「규제완화추진 3개년계획」에서 주류소매업면허에 관한 수급 조정규제 중 인구기준에 대해서라는 규정은 2003년 9월 1일로 폐지하기로 하고 또한 거리 기준 역시 2000년도 9월 1일로 폐지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1998년 3월 31일자로 「주류판매업면허 등 취급요령 등의 일부개정에 대해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그 취급을 규정한 것이지만, 1998년의 면허의 신청이나 부여상황 등을 근거로 1998년 3월 31일 각의결정인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개정)」(이하 「개정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의 완화를 차실히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신청이 없거나 혹은 신청건수가 면허수를 하회하는 이른바 허수를 감소시켜 면허부여제도의 유효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주류행정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와 기존판매점이 적은 소규모적인 소매판매지역에 대해서는 인접한 다른 소매판매지역과 통합하여 하나의 소매판매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 취급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2) 중앙주류심의회 담신의 개요

중앙주류심의회는 지난 1997년 6월 13일자 「판매면허제도 등의 견해에 대해서」라는 답신에서 금후부터 강구해야 할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 바 있다.

첫째, 인적요건 등의 면허제도는 금후에도 이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기준의 명확화나 수속의 간소화 등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취급요령에 의한 수급조정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1) 거리기준은 조기에 폐지한다.
- 2) 인구기준은 주류의 사회적 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상황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빠르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 3) 각종의 특례적 조치에 대해서는 수급조정요건의 검토와 함께 대폭적으로 정리하거나 축소하고, 면허제도는 한층 더 간소화하며 동시에 합리화를 도모한다.

(3) 흑맥주 제조면허 부여

주류의 제조면허의 운용에 대해서 특히 맥주 및 발효주 등의 제조면허에 대해서는 1993년 9월의 「긴급경제대책」에 따라 지난 1994년 4월의 주세법 개정에 의해 최종제조수량이 2천㎘에서 60㎘로 대폭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소량양조의 맥주, 이른바 「흑맥주」의 양조가 가능하게 되었다.⁷⁾

그리하여 일본은 1998년 4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251건의 흑맥주제조면허(본면허)를 부여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류의 제조면허 운용에 대해서는 「주류 등 제조면허 등의 취급요령」⁸⁾에서 규정하는 면허기준 사무처리방법 등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이지만, 주류의 제조면허 수급조정요건은 지난 1998년 12월 15일의 규제완화위원회 견해(제1차)를 근거하여 개정개혁에서 「수요가 미미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주류에 대해서는 수급조정을 행하고, 수급상황의 호전이 인정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당 품목에 대한 수급조정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행한 수급조정요건은 주세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주류업계의 축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1999년 6월 25일자로 취급개정을 행하였다.

(4) 주류 제조면허의 개선방향

또한 개정계획에서는 그 실시기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2000년이후에도 주류의 제조면허 개선방향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합성청주, 소주갑류, 막소주외에도 소주을류, 미림 및 원료용 알콜에 대해서는 해당 주류의 제조자가 기업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제조면허를 부여한다.

둘째, 맥주, 과실주류, 위스키류, 스프릿, 리

큐류 및 잡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취급의 명확화와 간소화를 도모하고, 신청자의 경영기반과 기술적 능력 및 제조장의 설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제조 면허를 부여한다.

셋째, 리큐류, 분말주 및 기타 잡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보전과 주세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제조면허시에 「제조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해서 해당 주류의 제조방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넷째, 주류제조면허의 취급개정과 더불어 연속식증류기의 신설 또는 확장의 승인 취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연속식증류기를 설치하고 있는 주류제조자가 기업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연속식증류기에 의해 제조되고 있는 주류와 동일한 종류나 또는 동일한 품목의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연속식증류기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확장을 인정한다.

4. 주류업의 근대화 지원 등

주류업을 둘러싼 극심한 환경 가운데 중소주류업자가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근대화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주류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업, 소주을류제조업, 과실주제조업 및 미림2종 제조업의 6개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대장성대

7) 우리 나라에서의 경우는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가 앞장서서 Microbrewery 기계를 판매하고자 주세법상의 맥주제조시설의 규제완화를 규제개혁위원회나 외국인투자 음부즈만 사무소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주장은 주질관리 및 국민보건, 안정적 세원관리, 유통질서 혼란 우려, 시설도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유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또한 국내 맥주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맥주제조시설을 완화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소화 38년도 장관통달 참조.

신이 책정한 근대화계획(1995년 7월~ 2001년 3월)에 의거, 그리고 소주율류제조업에 대해서는 (1997년 11월~2003년 3월)에 의거 근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업종 가운데서도 긴급하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주류도매업, 주류소매업 및 소주율류제조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종단체가 작성한 구조개선계획⁹⁾에 의거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97년 12월에 제출된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 및 1998년 6월에 성립한 「중앙성정등 개혁기본법」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 제140회 국회에서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신분야진출원활화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1999년 법률 제18호)이 제정되어 1999년 3월 31일에 공표되고 7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법은 「경영혁신 지원」 및 「경영기반강화 지원」의 2가지 지원을 하는 것에 의해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대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자 등이 작성한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금융, 세제, 예산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기동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2가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혁신 지원

사업자, 임의그룹, 조합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작성하고 都·道·부·현지사의 승인¹⁰⁾을 얻은 경우에는 금융, 세제, 보조금으로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경영기반강화 지원

소위 「safety net」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국가가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그 업종의 전국조합 등이 경영기반강화 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대신 및 사업소관대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조합 등의 조합원에게 금융과 세제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5. 주류용기의 재사용 추진

최근 폐기물의 감량화나 재사용화를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일본에서도 재사용의 추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운데 1991년 12월에는 중앙주류심의회에서 「주류용기 재사용에 관한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이외에 같은 해인 1991년 4월에는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환경의 보전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48호, 이하 '재사용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 6월에는 용기포장폐기물에 대해서 재사용을 추진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 제112호, 이하 '용기포장리사클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1997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일본 주류업계에는 종래 맥주병과 한 되병

9) 주류소매업, 주류도매업은 1996년 10월 ~ 2001년 3월이며, 소주율류제조업은 1997년 12월 ~ 2003년 3월까지이다.

10) 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또는 그 지방지분부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등과 같은 재활용 용기가 존재하고 있지만 '중간보고'와 '재사용법'의 시행 등을 근거로 예를 들면, 청주산업의 경우에는 1992년 12월부터 500kl 규격 통일병(아트병)을 도입하고, 1993년 11월부터는 병회수를 위한 플라스틱제 유통상자(P상자)의 도입을 개시하는 등 유통시스템의 정비를 도모하고 그 추진에 노력하는 등 주류용기의 재사용 촉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현재로서는 첫째, 한되병 등의 재활용(returnable)병의 유통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둘째, 수입와인의 증가에 의한 착색유리병의 재사용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법률상 의무이행과 재사용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므로, 1998년 9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은 「주류용기 등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류용기의 재사용을 둘러싼 현행의 제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주류산업에서의 당면 주류용기의 재사용 추진을 위해 채택한 방안」을 결정하고 이러한 방안의 실시에 대한 대책을 개진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일본 국세청은 「주류용기 등에 관한 협의회」가 결정한 방안에 대해서 개개의 주류업자나 주류업계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방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행정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자도 '용기포장재사용법'에 의거 재상품화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종이 용기포장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도 재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최근까지 동법의 완전실시를 위해 관계성령 등의 개정 등에 대하여 관계 성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주류업계는 격동의 시기에 처해 있으며 주류업계를 둘러싼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류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의 진전과 소비자주의의 다양화에 따른 주류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규제완화의 진전 등 생산·유통·소비의 다양한 국면에서 큰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기반의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주류산업의 현상은 아마도 우리 나라 주류산업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주류산업계도 이제부터라도 각종과제에 대해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冷眼觀人, 冷耳聽語, 冷情當惑, 冷心思理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냉정한 귀로 말을 들으며, 냉정한 정으로 사물을 대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할 지니라.